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996. 2. 8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2. 2
- 나. 제출자 : 서산시장
- 다. 회부일자 : 1996. 2. 5
- 라. 상정일자 : 1996. 2. 8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안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겸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관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안 제18조)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5항)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3조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와 경로효친등 특별휴가, 건강진단과 외국어 시험응시에 있어서 공가의 실시등 현행조례상의 미비점을 준칙안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55 호
의결년월일	1996. (제 11 회)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2.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1996.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 요 관 자

- 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안 제18조),
- 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함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5항),
- 마.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 제6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당직근무)” 를 “(당직및비상근무)” 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 라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당직근무자” 를 “당직및 비상근무자” 로, “당직근무” 를 “당직및 비상근무” 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 를 “당직및 비상근무” 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전단중 “공무원복무규정” 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중 “근무시간” 을 “근무시간등”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 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근무시간의 변경)” 을 “(근무시간등의 변경)” 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 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중 “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 할수 없다.

제20조의 제목중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접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2원”을 “60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6원”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및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

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및 제8항으로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8조 내지 제30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제 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생략)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개 정 안

제2장 근무시간등

제13조(근무시간) ①(현행과 같음)

② -----
----- 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
에는 -----.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현행		개정안	
4년이상 5년미만	17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20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신설)		6년이상	23일
<p>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제절에 <u>던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u></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u>편중되지</u>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 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p>	
<p>②~③ (생략)</p> <p>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가를 가립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u>같음</u>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제20조(연가일수에 의한 산입)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생략)</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후단시설)</p>	<p>제21조(병가) ①</p> <p>60일</p> <p>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 ~ 2. (생략)</p> <p>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p> <p>180일</p> <p>③(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집열·집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때</p>	<p>제22조(공가)</p> <p>1. 참가할 때</p>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u>참가</u> <u>하러 할 때</u></p> <p>4.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참가</u> <u>할때</u></p> <p>4. (현행과 같음)</p> <p>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u>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u> <u>을 할 때</u></p> <p>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u>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u></p>
<p>5. (생략)</p> <p><u>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u> <u>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u> <u>별표3의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수있다.</u></p> <p>②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 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u>휴가</u>를 얻을수 있다.</p> <p>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u>생리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어 재학중인 공무 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입기간에 대한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u>특별휴가</u>를 허가할 수 있다.</p>	<p>7. (현행 제53조와 같음)</p> <p><u>제23조(특별휴가) ①-----</u> ----- ----- <u>사휴가</u> ----- ②----- ----- <u>출산휴가</u> ----- ----- ③----- <u>여성보건휴가</u> ----- ④----- ----- ----- <u>수업휴가</u> ----- ⑤----- ----- <u>포상휴가</u> -----</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⑥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생략)</p> <p><u>(신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승선 허가 -----</p> <p>⑧----- 퇴직준비휴가 -----</p> <p>제26조(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p> <p>②(현행과 같음)</p> <p>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p>

현행	개정안
	<p>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p> <p>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것</p> <p>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것</p> <p>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p>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p>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p> <p>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p>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p>

현행	개정안
<p><u>제27조(국외여행) (생략)</u></p> <p><u>제28조(준용) (생략)</u></p> <p><u>제29조(시행규칙) (생략)</u></p>	<p>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p> <p><u>제28조(국외여행) (현행제27조와 같음)</u></p> <p><u>제29조(준용) (현행제28조와 같음)</u></p> <p><u>제30조(시행규칙) (현행제29조와 같음)</u></p>